

「20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추경)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추경)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지원대상 : 사업에 재도전*하는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하는 것을 의미(先폐업 後창업)

지원규모 : 총 191명 내외(주관기관별 지원규모 상이)

< 주관기관별(지역별) 지원규모 >

구분	서울	경기	강원	세종	대구	전북	총계
지역별 지원규모	35명	35명	28명	29명	35명	29명	191명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입주공간 등 패키지 지원

지원기간 : '20년 9월 ~ '21년 4월(7개월간)

2. 세부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①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제작·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평균 40백만원)
② 프로그램 지원	재창업 교육	실패원인분석, 비즈니스 모델 수립·고도화 등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네트워킹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정기 및 수시 멘토링·네트워킹 지원
③ 인프라 지원		창업활동을 위한 입주공간 제공 (별도 평가를 통해 제공)

① 사업화 지원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평균 40백만원)

< 사업비 구성(안) >

총 사업비(A+B)	정부지원금(A)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현물*	소계(B)
100%	75% 이하	5% 이상	20% 이하	25% 이상
(예시) 53.4백만원	40백만원	2.8백만원	10.6백만원	13.4백만원

* 현물은 (예비)재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② 프로그램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 (재창업교육) 실패원인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재창업교육 수강 지원(35시간 이상)
 - 별도 온라인플랫폼(창업에듀) 및 교육형 기관을 통해 교육 커리큘럼 제공 예정
- (멘토링) 재창업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기·수시 멘토링 지원
- (네트워킹) 재창업자와 전문가, 창업자 간 정기·수시 네트워킹 지원

③ 인프라 지원 : 주관기관을 통한 입주공간 제공*

*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입주공간 제공 예정

3.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3년 이내(17.7.8 이후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채무조정이 필요한 자는 사업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최종 선정시 까지 ‘채무조정’을 완료

*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프로그램

① 예비 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0.7.8)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자격검토)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사실확인서류 등을 확인

* (별첨2) 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 및 양식 참조

②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②-1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7.7.8 이후 재창업한 기업) *先폐업 後창업

☞ ②-2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 ②-3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1’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자격검토) 대표자 본인 및 공동대표자의 개별 운영 중인 소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동대표 참여 동의서 등을 확인

* (별첨2) 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 및 양식 참조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최종선정(K-스타트업 선정자 공지) 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신청 시 선택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절차를 거쳐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는 자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최종선정(K-스타트업 선정자 공지) 전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완납한 자(기업)는 지원 가능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평가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조

④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⑤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또는 기업

⑥ 중기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참고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⑧ 기타 중기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4. 사업 신청

□ 공고기간 : '20. 7. 8(수) ~ '20. 7. 31(금)

○ 온라인 신청·접수 기간 : '20. 7. 16(목) ~ '20. 7. 3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www.k-startup.go.kr)

* [별첨 1, 2] 사업계획서 양식, 증빙서류 제출 양식 참조

< 신청 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 정보 입력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 ⑧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업로드 용량은 '50메가바이트(MB)'로 제한되며, 초과 시 등록 불가

○ **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에 한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 신청 시 '**채무조정 필요 여부**' 필수 선택

- 또한, 방문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 가능 일자 선택

* [별첨 3]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및 제도 소개 참조

< 채무조정 프로그램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

① 온라인을 통한 사업신청 완료 → ② 채무조정 필요자에 한해 본인이 선택한 상담일자에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 ③ '지부 방문 및 상담'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 가능 여부 확인' → ④ 적격자에 한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 → ⑤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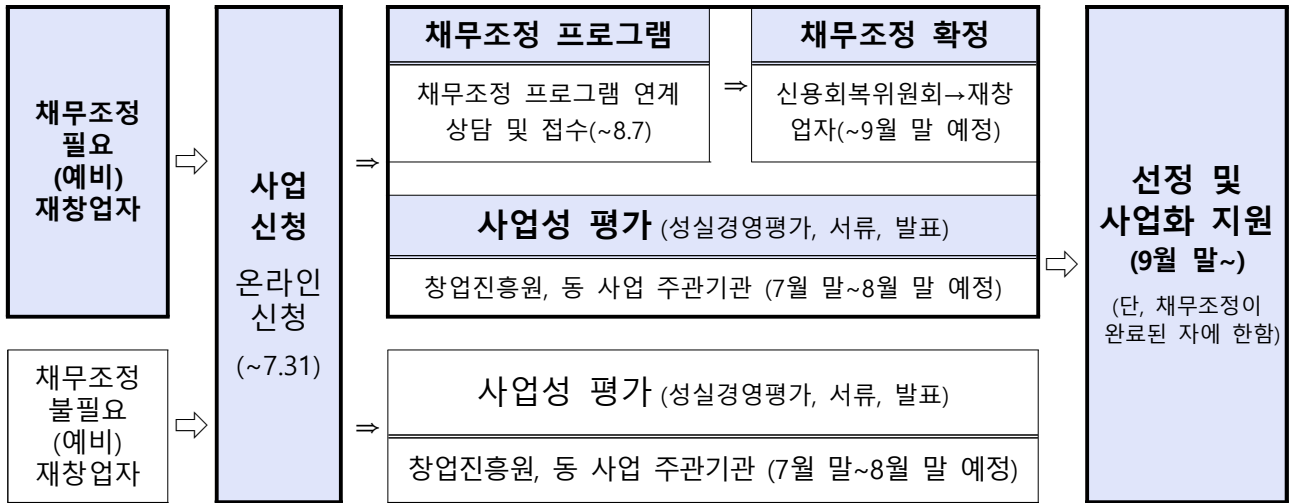
☞ 채무조정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평균 2개월 소요) 참여를 위해 조기 사업 신청 완료 및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권장

☞ 채무조정 프로그램 상담·접수 등을 위한 '채무조정 상담 요청일'은 '20.8.7(금)이내로 설정

☞ (예비)재창업자가 사업신청 완료 후 '채무조정 상담 요청일'에 신복위 지부 방문 시 상담 예약 없이도 상담 및 접수 가능 (사업신청 미 완료시 상담 예약 스케줄에 따라 변동 가능)

* 채무조정 프로그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재도전 성공패키지(채무조정 프로그램 진행 시) 사업 선정 절차(안) >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5. 평가 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성실경영평가,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예비)재창업자 선정
- ①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등을 평가
 - ② (서류평가) 문제인식 수준(폐업원인 분석 등) 및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 구성 등 사업계획 중심의 평가 →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선발
 - ③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 최종선정
 - 주관기관별 (예비)재창업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사업화 자금 한도를 최종 확정

< 서류/발표평가 항목 세부내용(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폐업(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고객 니즈에 대한 개선과제 등
실현가능성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등
성장전략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팀 구성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등

□ 평가절차(안)

주체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구분	① 성실경영평가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일정	'20.8월 초~8월 말	'20.8월 초	'20.8월 중
비고	부적합 판정 시 소명기회 부여(1회)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 선발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일정은 온라인 신청·접수 시 선택한 주관기관으로 문의

□ 가점 및 서류평가 면제(서류평가 시 반영)

[가점] 항목별 각 1점 부여(최대 5점)

①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소재 (예비)재창업자

* 예비재창업자 - 주민등록등본(초본)상 주소지 기준

** 재창업자(개인,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 | | | |
|----------|----------|--------------|
| ① 전북 군산시 | ② 울산 동구 |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
| ④ 경남 고성군 | ⑤ 경남 거제시 | ⑥ 경남 통영시 |
| ⑦ 전남 영암군 | ⑧ 전남 목포시 | ⑨ 전남 해남군 |

② '19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입상자

③ '19년 「재도전 힐링캠프」, 「재창업 희망캠프」 수료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시행한 프로그램에 한함

④ 최근 2년 이내('18년~현재)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진출자(행안부 주최), 재창업경진대회(중기부 주최) 장려상 수상자

⑤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재창업자(붙임3참조)

[서류평가 면제]

① '19년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진출자(중기부 주최)

② '19년 재창업경진대회(중기부 주최) 우수상 이상 수상자

* 가점항목 ②, ③ 항목은 내부 가점 확인예정으로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 서류평가 면제항목 ①, ② 내부 서류 확인예정으로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 본 사업의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신청·접수 공고일('20.7.8) 이전의 가점 및 면제 해당자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요건검토를 통과한자에 한함

6.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지침 및 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시제품 제작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재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 재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재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수시, 최종)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전담·주관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재창업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 정해진 교육시간(35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재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가 발생하면 부정이익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고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③ 정책자금에 제3자 부당개입의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재 등의 제한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제3자 부당개입이란 통상의 자문, 컨설팅 외에 기업평가에 직접 관여하거나 기관 사칭, 지원 결정 조건으로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경우 등을 의미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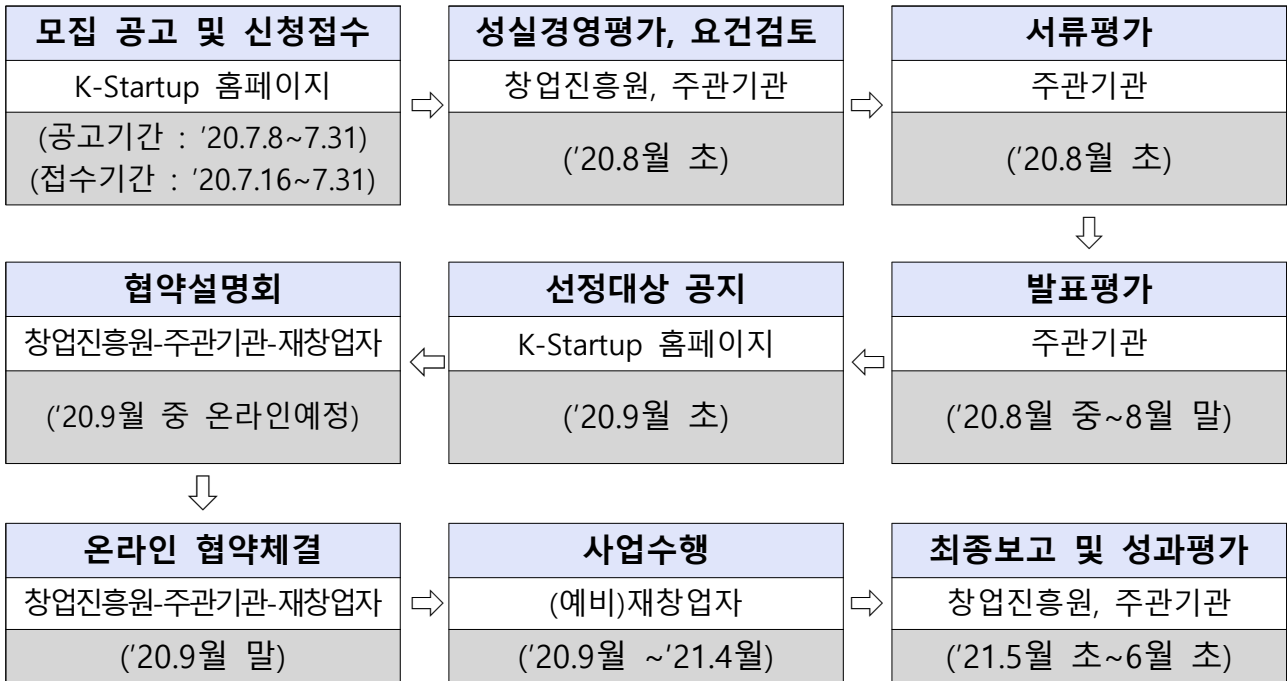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채무조정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조정(채무조정합의서 체결)이 최종 선정 전까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예비 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및 재도전 성공패키지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8.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9. 문의처 및 기관별 지원규모

□ 사업설명회(온라인) : '20. 7. 10. (금) 15:00

* YouTube에서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추경 모집공고」 검색
 (검색이 안될 시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자, #재도전 등 단어 위주로 검색)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 없이 1357

연번	지역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규모
1	서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양정아	02-739-5117	jayang@ccei.kr	35명
2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진용	031-259-6474	jjy@gbsa.or.kr	35명
3	강원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이효주	033-250-8966	hj19@kangwon.ac.kr	28명
4	세종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박병준	044-999-0503	medine@ccei.kr	29명
5	대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정대현	053-759-8621	jeongdh@ccei.kr	35명
6	전북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남상선	063-711-2151	nss@jbba.kr	29명

□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참고 1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공구, 기구, 비품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신규 또는 기고용)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 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여비	창업기업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39조~제48조(창업기업 사업비 비목 등)를 참조, 비목별 세부설명 및 집행기준 필히 확인 후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

참고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참고 3**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가점 자격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사항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약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업종분류코드 세분류(4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할 경우 서류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